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70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임종득 · 안철수 · 김기웅
박형수 · 서천호 · 한기호
김상훈 · 윤상현 · 이달희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용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로, “제4호의2”를 “제3호, 제4호의2”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를 “제9호 및 제1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u>2026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 -----.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	②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
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
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⑧ ~ ⑩ (생략)

-----.

-----.

③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2028년 12월 31일-----

-----.

1. 2.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illegible]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 2028년 12월 31일

[illegible]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략)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
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
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
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illegible]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

다. 1. · 2. (생 략) ② ~ ②② (생 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 략)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u>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u>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u><신 설></u> 4.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2. (생 략) ⑪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9호 및 제1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u>----- ----- <u>3의2.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u>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u>만 적용</u> 4.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u>2028년 12월 31일</u>----- -----. 1. ·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	--